

##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

①사업부서	행정심판총괄과	②담당자 (전화번호)	부서장: 박순홍(3급) (044-200-7811) 담당자: 이용만(4급) (044-200-7821)
③정책사업명	「행정심판법」 개정		
④선정기준	법령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	⑤사업기간	'16. 3. ~ '16. 12.
⑥주요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배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하는 인용재결 시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명시하고,</li> <li>○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률 개정 추진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개정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결의 기속력(羈束力)으로서 재처분 의무 명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경우 소관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을 명시</li> </ul> </li> <li>○ 재결의 기속력 강화를 위해 간접강제 도입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법예고 : '16. 4. 15.~5. 25.</li> <li>○ 법제처심사 : '16. 6월 중</li> <li>○ 국회제출 : '16. 7월 중</li> </ul>		